

#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99-7
----------	------

제출년월일 : 1999. 3.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 1. 폐지이유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97. 9. 11 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 사용되는 김제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2. 주요골자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설치제한 조례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가 개정('97. 9. 11)됨에 따라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97. 9. 11, 제15480호)

##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1996.10.4, 제 17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